

제172회 영등포구의회
2012년도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2. 12. 10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基 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163호로 2012년 11월 14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구민들에게 도시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친환경 도시농업의 참여와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개인정서의 함양과 지역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도시농업사업 관련 용어 정의(안 제2조)

- 도시농업, 친환경농업, 도시텃밭, 상자텃밭 용어 정의

나. 기본원칙(안 제3조)

- 구청장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다. 위원회 설치(안 제4조)

- 구청장은 도시농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라. 위원회 구성 등(안 제6조)

-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중 40%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함
-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구청장이 위촉하고 해당 회의종료 시 해촉 함

마. 도시텃밭 등 지정(안 제10조)

- 구청장은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녹지, 그 밖에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대하여 도시텃밭 등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바. 상자텃밭의 보급 등(안 제11조)

- 구청장은 도시농업 참여자에게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함

사. 교육(안 제12조)

- 구청장은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아. 우수사례 발굴 등(안 제13조)

- 구청장은 활동이 우수하거나 저변확대에 이바지한 자에게 시상할 수 있도록 함

자. 보조금의 지원(안 제14조)

-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서울특별시 친환경농업 및 주말·체험영농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구민들에게 도시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친환경 도시농업의 참여와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개인정서의 함양과 지역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제출된 조례안 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에 도시농업, 친환경농업, 도시텃밭, 상자텃밭 등 도시농업사업과 관련된 용어를 정의하고
- 안 제3조에 구청장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4조에 구청장은 도시농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등포구 도시농업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안 제6조에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구의원 1명 위촉)으로 구성하되, 그 중 40%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하고,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구청장이 위촉하고 해당 회의종료와 함께 해촉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10조에 구청장은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녹지, 그 밖에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대하여 도시텃밭 등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안 제11조에 구청장은 도시농업 참여자에게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12조에 구청장은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안 제13조에 구청장은 활동이 우수하거나 저변확대에 이바지한 자에게 시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14조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이 조례안은 도시화와 각종 개발로 인해 희색빛갈로 덮여가는 도시민의 삶속에서 살아 숨 쉬는 흙과 자연을 접할 기회를 만듦으로서 생태적 감수성을 높이고 농업이 가지는 다원적 공익기능을 이해하며, 농촌문화 경험을 통한 도심공동체의 삶을 복원하기 위해 도시의 유휴지나 각종 공간을 활용하는 도시농업을 보급·활성화시켜 궁극적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제출된 조례안으로서
- 도시농업은 산업화·도시화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환경적 문제점들을 해결하거나 저감시킬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되어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11년 11월 22일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2년 5월 23일 시행되었고 서울시에서도 이미 2007년 7월 30일 「친환경농업 및 주말·체험영농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현재 종로구, 서대문구, 금천구, 서초구 등 총 12개 자치구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 상위법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제3조제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동법률 제10조 내지 제19조에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제도 수립과 지원방안에 대해 규정하면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권장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이 정착되면 도심 유휴지, 자투리땅, 상자텃밭, 체험학습장 등을 친환경적인 도시농업으로 활성화하여 구민들의 공동체적인 삶을 복원하고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친환경 녹색공간을 확보하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 등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구현 하는 정책의 하나로 자리매김 될 것으로 기대되나 보다 많은 구민들의 참여 범위의 확대 그리고 철저한 사후관리로 일부 제한된 구민만이 참여하여 전시행정 이라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구민의 자발적 참여 확대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검토결과 상위법에 부합되며 조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 짐.

- 참고로 우리 구의 도시농업 현황은 현재 자투리텃밭 2개소 1,694m², 옥상텃밭 3개소(198m²) 총 5개소 1,892m²가 운영되고 있으며 회원수는 878명, 구획수는 88구획이며, 사업비는 총 5,800만원 임.

참 고 자 료

1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시농업인은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사용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힘써야 하고, 도시농업에 사용되거나 이용된 농자재 등을 안전하게 관리 또는 처리함으로써 생활환경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힘써야 한다.

제10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도시농업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농업의 공익기능 등에 관한 교육과 홍보
2. 도시농업 관련 체험 및 실습 프로그램의 설치와 운영
3. 도시농업 관련 농업기술의 교육과 보급
4. 도시농업 관련 텃밭용기(상자, 비닐, 화분 등을 이용하여

흙이나 물을 담아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종자·농자재 등의 보급과 지원

5. 그 밖에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도시농업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도시농업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농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도시농업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연구 및 기술개발)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도시농업 관련 연구의 활성화와 기술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도시농업 관련 연구 및 기술에 관한 수요조사
2. 도시농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3. 도시농업 관련 연구성과 및 개발된 기술의 보급·교류 및 협력
4. 그 밖에 도시농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도시농업 관련 연구를 하거나 기술을 개발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도시농업공동체의 등록 및 지원 등) ① 도시농업인들은 도시농업을 함께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단체(이하 “도시농업공동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도시농업공동체의 도시농업에 들어가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도시농업공동체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공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와 도시농업 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도시지역에 위치한 공유지 중에서 도시농업에 적합한 토지를 선정하여 공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하려는 경우 시·도지사는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공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승인을 받으려면 공영도시농업농장 개설

승인신청서에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제2항에 따른 승인권자(이하 “개설승인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업무규정을 변경하려면 미리 개설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영도시농업농장을 폐쇄하려면 폐쇄 예정일 3개월 전까지 개설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인의 기준 및 절차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공영도시농업농장 인접지역 토지의 매수·교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영도시농업농장 인접 토지 소유자와 계약에 따라 인접 토지를 예산의 범위에서 매수하거나 공유지와 교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 매수나 교환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토지를 매수 또는 교환하려는 경우 매수 또는 교환의 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

제16조(공영도시농업농장 토지의 임대)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농업인의 신청을 받아 도시농업인에

게 공영도시농업농장의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공영도시농업농장의 토지를 임대받은 도시농업인은 그 토지를 도시농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영도시농업농장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임대의 요건과 기간 및 절차와 방법 등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는 민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과 운영에 들어가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영도시농업농장은 위치와 면적,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교류 및 협력 시책의 수립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의 저변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인 사이 또는 도시농업인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 사이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을 통하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다목에 따른 주말농원사업과 연계를 강화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유아교육법」 제2조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도시농업 관련 교육 및 실습·체험 활동이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6조에 따른 식생활 교육과 연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농업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와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박람회 등의 개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 박람회 또는 도시농업 관련 생활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4조(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수립)** ① 시장은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구청장은 서울시의 실천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자치구의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3

영등포구 도심농장 현황

연번	농장(텃밭)명	구성 형태	지목	소재지	운영자	면적 (m ²)	회원수 (구획수)	사업비 (천원)
1	영등포동 행복 나눔 텃밭	자투리 텃밭	대지	문래동3가 55-6	자원봉사 연합회외1	414	60(1)	10,000
2	당산1동 행복 텃밭	자투리 텃밭	대지		자원봉사 연합회		22(1)	
3	문래동 행복이 자라는 텃밭	자투리 텃밭	대지		새마을지도 자협의회		40(1)	
4	땅을 일구는 양평동 사람들	자투리 텃밭	대지		청소년지도 자협의회		25(1)	
5	양평1동 주민 센터 옥상	옥상 텃밭	대지	양평동1가 211-1	주민자치 위원회	50	23(8)	4,000
6	양평2동 구립 경로당 옥상	옥상 텃밭	대지	양평동4가 238-1	새마을 부녀회	130	25(8)	4,000
7	대림1동 주민 센터 옥상	옥상 텃밭	대지	대림동 899-2	주민자치 위원회	18	23(2)	2,000
8	희망을 일굽니다 양화나루 텃밭	자투리 텃밭	잡종 지	성산대교 하단 자원 순환센터	통장연합회 등 66개 단체	1,280	660(66)	38,000
계	5개소					1,892	878(88)	58,000